

수급자 안전관리 교육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노인인권보호지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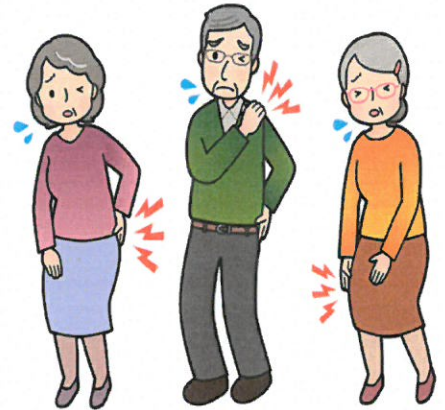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01. 욕창예방
02. 낙상예방
03. 탈수예방
04. 배변도움
05. 노인인권 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06. 관절구축(오그라들) 예방
07. 치매예방

욕창이란, 빨갧게 되거나 심하면 상처가 생기는 것

피부 한곳이 오래 눌리면 혈관이 압박을 받아 이곳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산소나 영양공급이 안되어, 빨갧게 되거나 심하게는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뼈의 돌출부 부분에 많이 발생하는데, 척추, 어깨, 꼬리뼈, 무릎, 복숭아뼈 등에 잘 발생 합니다.
이는 노인 환자분들, 특히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 위중한 환자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환 입니다.



욕창 발생원인

마비대상자,
극심한 허약한 상태
부동 / 와상

마비 대상자나 극심하게 허약 상태 및
부동, 와상 등으로 운동성이 감소된
대상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체중감소, 근육 위축 등
부적절한 영양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
요/변 실금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 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욕창 예방 활동

- ▶ 하루 한 번 이상 피부 점검: 뼈 돌출 부분
- ▶ 피부 청결히 하기: 따뜻한 물로 씻고 잘 말려주기

- 비활동: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 장비를 제공한다.
- 실금: 배변, 배뇨 후 피부를 깨끗이 씻고 말린다.
- 영양불량: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제공한다.
- 감각 감소와 정신상태 저하: 욕창 예방을 위해 수급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의 능력을 사정한다.
- 손상된 피부통합성: 압력을 피하고 피부를 순환시킨다. 발적부위는 마사지하지 않으며 열 램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욕창 초기 증상 대처법 초기에 빠른 대처 필요!

- .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 . 주의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 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 .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 . 춤지 않을 때에는 30분정도 햇볕을 쬐인다.



02 낙상예방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낙상이란,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이 닿은 것, 넘어지는 것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02 낙상예방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낙상 발생원인

인지·심리적

낙상의 심리적 요인을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치매, 우울증 그리고 불안이나 공포장애가 있다. 치매는 보행의 변화와 인지 기능 장애를 발생시켜 주위의 자극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무관심, 집중력 저하,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인지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 또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체적 요인

여러 신경학적 질환들로서 치매, 말초신경장애, 현훈, 어지러움, 뇌종양, 파킨슨병, 시력 저하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신경학적 질환들 외에 심혈관계질환, 저혈압, 대사성 질환,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도 낙상을 유발하는 신체적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곳,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낙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75세 이상의 여성,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02 낙상예방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낙상예방 환경정비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 사용

-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계단- 손잡이 장치 / 미끄럼방지 설치

욕실- 손잡이 설치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거실, 복도-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바닥에 물기제거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침대- 침대 사이드바 사용/바퀴 잠금 장치/ 침대 높이조절

화장실- 손잡이설치/바닥에 물기제거

03 탈수예방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탈수가 몸에 미치는 영향

어지럼증, 피로, 주름, 변비

만성탈수가 몸에 미치는 영향

어지럼증

혈액 줄고 혈압이 낮아져 발생

피로

수분 부족으로 필수아미노산이 전신에 전달되지 못해
쉽게 피로해짐

주름

피부 속 콜라겐·엘라스틴섬유가 파괴돼 생김

변비

대장 내 수분 부족으로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생김

만성탈수를 예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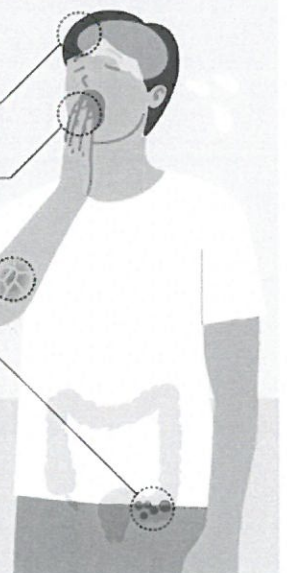
커피·녹차 등
카페인 음료 피하기



물 하루
2L 마시기



식사 거르지
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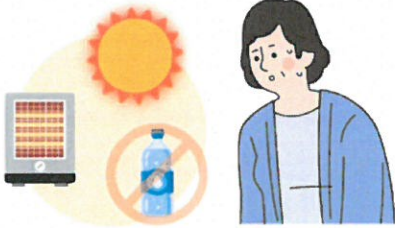


03 탈수예방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체중의 절반 이상이 수분!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체액이라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내 수분은 체온조절, 몸에 필요한 영양소 및 산소 전달, 노폐물 배출 등 생명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체내 수분 함량은 섭취량에 의해 조절되는데, 수분 배출량이 더 많을 경우 탈수의 증세가 발생합니다.



2

탈수 증상은 미열, 입안 건조, 체중 감소, 노폐물(소변, 땀) 감소 등이며 수분 함량이 많은 장기에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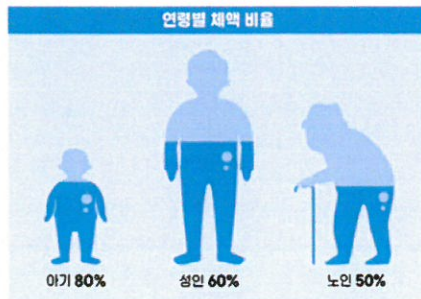
	뇌 현기증, 집중력·기억력 저하, 두통, 기억 소실, 경련 등
	소화기 식욕저하, 구토, 설사, 변비 등
	근육 근육통, 저림, 마비 등

3

03 탈수예방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의 경우 근육 감소, 음식물 섭취량 감소, 목마름에 대한 감각 저하로 일반 성인에 비해 탈수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4

따라서 탈수 예방을 위해 생활에서 2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적절한 식사량의 유지

우리가 섭취하는 수분의 약 40%는 식사로부터 공급되므로 탈수 예방을 위해 식사량을 유지합니다.



5

2. 하루 8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한번에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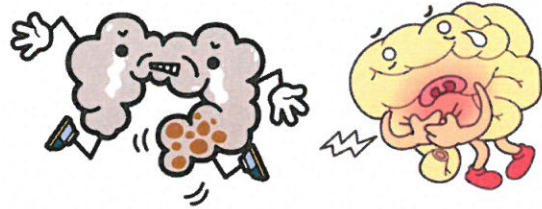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6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운동부족,
노인들의 변비가 늘어났다?!**



**노인 변비는 노쇠의 신호!
변비는 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배변 장애의 원인

활동량 및 체력저하, 식욕부진, 이완성 변비로 인한 분변매복

-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제발 좀 나와~
노인 변비**

04 배변도움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배변 장애의 원인

- 활동량 및 체력저하
- 식욕부진,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
- 이완성 변비로 인한 분변매복



활동량 체력저하

신체 및 장기 기능저하로 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장의 활동도 약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까지 변이 내려와도 배변시 힘을 충분히 줄 수 없어서 변이 출구에서 막혀 배출 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부진, 노인성질환

음식물 특히 식이섬유의 섭취 감소로 한층 더 배변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질환, 악화된 치핵 등 항문질환, 신경정신질환, 약물섭취 등의 원인이 겹쳐서 배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완성변비 분변매복

노인의 경우 동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며칠간 변을 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딱딱한 분변이 직장에 정체되거나 축적되어 분변 매복을 일으켜 직장팽만감, 직장내 이물감, 배변긴급, 직장과 복막의 막연한 동통을 일으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장폐쇄를 일으킵니다.

04 배변도움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규칙적인 식사습관



적절한 수분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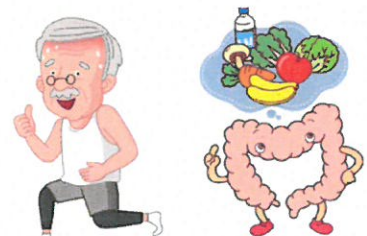
섬유질 섭취
(각종 야채 및 채소)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배변



**노인 변비를 예방하려면
운동과 식생활이 중요하다!**

관절구축(오그라듐)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

- 관절 구축은 고정, 와상,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등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관절낭, 인대, 건등 관절 주위 조직이 유착, 반흔형성 등의 변화가 일어나 발생
- 근육의 단축, 다발성 근염, 마비등으로 근육의 섬유증이 발생하여 축이 일어나며
외상, 화상 같은 질환으로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반흔 형성으로 인해 구축이 발생



관절구축 예방

관절운동(스트레칭포함)은 관절의 주변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효과적인 방법!

- ① 손가락운동: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 ② 손목운동: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 ③ 팔운동: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위치 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 ④ 어깨운동: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위로 올린 후,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 ⑤ 척추운동: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 ⑥ 무릎운동: 몸을 누워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꺾었다.
반대측의 다리를 편자세를 취한다.
- ⑦ 발목운동: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린다.



치매란

성숙한 뇌가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



치매예방수칙

3·3·3을 아시나요?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인지적인 기능 즉,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이다.

- 3권(動, 움직일 것) -	- 3금(禁, 참을 것) -	- 3행(行, 행할 것) -
01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일상에서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도 좋아요. ▶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체조하기, 복싱, 기구기 등 ▶ 규칙적인 운동: 무산소 운동, 한 번에 2~30분씩, 주 3회 이상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이 다소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	01 절주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술은 한 번 마실 때 3잔보다 적게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도 마세요. ▶ 과음이나 음란적인 음주는 인지기능손상으로 인한 알콜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01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고혈압과 비만, 당도를 예방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02 식사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즐겨주세요. 생선은 거르지 말고, 생선과 채소는 골고루 즐겨주세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드세요. ▶ 육류 등의 고지방 섭취는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02 금연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흡연은 시작하지 말고,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당장 끊는 것이 좋아요. ▶ 흡연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1.5배 높으며, 2년 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으므로 당장 금연하기	02 소통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가족, 친구와 자주 연락해서 만나고, 단체 활동과 여가생활을 하세요. ▶ 자원봉사, 교회 상담 등의 종교 활동 등 교회, 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상대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속도가 느리고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낮음
03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쓰기를 하세요. ▶ 낱말 맞추기, 보지보기, 독서 및 영화·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취미활동 등은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줄 수 있는 두뇌활동이므로 꾸준히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	03 뇌 손상 예방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운동할 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쳤을 때에는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손상을 경험해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위험이 1.18배 높음	03 치매조기 발견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서 치매조기검진을 받고, 치매 조기증상을 알아두세요.

07 노인인권보호지침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인권보호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07 노인인권보호지침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07 노인인권보호지침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07 노인인권보호지침

성심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 시설 내·외부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폭행,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욕설,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강취
성적 학대	방임 및 자기방임	유 기
		
성폭력, 성희롱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노인학대예방

-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자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 61조의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